

# 韓國馬事會法

(1962. 1. 20公布)  
(法律第 1012號)

**第 1 條 (目的)** 本法은韓國馬事會의 組織運營과競馬에關한事項을規定함으로써馬匹의改良增殖과馬事の振興및畜産의發展에寄與하게함을目的으로한다

**第 2 條 (法人格)** 韓國馬事會(以下馬事會라한다)는法人으로한다

**第 3 條 (事務所)** 馬事會는主된事務所를서울特別市에두고必要한곳에支事務所를둘수있다

**第 4 條 (登記) ①** 馬事會는主된事務所所在地에서다음의事項을登記함으로써成立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의年月日
5. 資産의總額
6. 會長, 常任理事, 理事와監事의住所姓名

② 前項各號의事項中變更이생겼을때에는 3週間內에主된事務所의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한다

③ 前項의規定에依하여登記하여야할事項은登記後가아니면第3者에게對抗하지못한다

**第 5 條 (類似名稱使用禁止)** 本法에依한馬事會가아니면이와類似한名稱을使用하지못한다

**第 6 條 (免稅)** 馬事會에對하여는所得稅, 法人稅, 營業稅및登錄稅를賦課하지아니한다

**第 7 條 (定款) ①** 馬事會의定款에는다음의事項을規定하여야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任員에關한規定
5. 事業과그執行
6. 資産에關한規定
7. 定款의變更에關한規定

② 定款의變更은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지아니하면그効力を發生하지아니한다

**第 8 條 (規約) ①** 馬事會는法令과定款의範圍內에서다음의事項에關하여規約를制定할수있다

1. 競馬의施行에關한事項
2. 勝馬投票에關한事項

3. 會計에關한事項

4. 任員의報酬, 職員의定數, 任免및給與에關한事項

② 馬事會는規約을定하거나變更하고자할때에는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第 9 條 (任員)** 馬事會에다음의任員을둔다

1. 會長 1人
2. 常任理事 2人以內
3. 理事 5人以內
4. 常任監事 1人
5. 監事 1人

**第 10 條 (任員의職務) ①** 會長은馬事會를代表하며會務를統理하고理事會의議長이된다

② 常任理事는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會長은補佐하며會務를執行하고會長이事故가있을때에는그職務를代行한다

③ 監事は馬事會의財産과業務執行狀況을監査하며理事會에參席하여發言할있으나票決權은없으며監査結果를農林部長官에게報告할수있다

**第 11 條 (任員의任免과任期) ①** 會長, 常任理事, 理事와監事は그職務에必要한學識과經驗이豊富한者中에서農林部長官이任命한다

② 會長, 常任理事와理事의任期는 3年으로하고監事의任期는2年으로한다

③ 任員의任期는任命한날로부터起算한다

**第 12 條 (任員의缺格事由)** 다음各號의 1에該當하는者는馬事會의任員이되지못한다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또는破産者로서復權되지아니한다
2. 禁錮以上の刑을받고그執行이終了되거나執行을받지아니하기로確定된後3年을經過하지아니한者
3. 馬事會가行하는競馬에關한馬匹의所有者
4. 國會議員, 公務員, 地方議會議員및政黨의幹部

**第 13 條 (兼職禁止)** 馬事會의常任任員은營利를目的으로하는團體의任員이되거나營利事業에從事하지못한다 但農林部長官의許可를받았을때에는例外로한다

**第 14 條 (代表權의制限) ①** 馬事會와會長, 常任理事또는理事와의利益이相反하는事項에關하여는常任理

사가馬事會를代表한다

② 馬事會와會長, 常任理事또는理事와의訴訟에關하여도前項과같다

**第15條 (理事會)** ① 理事會는會長, 常任理事와理事로써構成하며會長이이를召集한다

② 다음의事項은理事會의議決을얻어야한다

1. 收支豫算과事業計劃
2. 收支決算
3. 定款의變更
4. 不動產의處分
5. 規約의制定및變更
6. 幹部職員의任免
7. 其他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할事項

③ 會議의議決은構成員過半數의出席과 出席員3分の2以上の贊成으로써이를行한다

**第16條 (民法의準用)** 民法第35條와第36條의規定은馬事會에이를準用한다

**第17條 (事業의範圍)** 馬事會는그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다음의事業을行한다

1. 馬匹의輸入, 生産, 育成및改良増殖
2. 馬匹利用의指導獎勵
3. 競馬의開催
4. 馬匹衛生에關한事業
5. 馬事に關한調査研究
6. 其他本法의目的을達成하기爲하여必要한事業

**第18條 (事業計劃)** 馬事會는每事業年度の事業計劃을作成하여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이를變更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第19條 (收支豫算)** 馬事會는每事業年度の收入支出豫算을編成하여當該事業年度開始前에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이를變更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第20條 (事業年度)** 馬事會의事業年度는政府의會計年度에準한다

**第21條 (借入金)** 馬事會는資金を借入하고자할때에는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農林部長官의認可를얻어야한다

**第22條 (資金의運用)** 馬事會는다음의方法에依하지하지하고業務上資金을運用하고자할때에는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1. 金融機關에의預金
2. 國債其他農林部長官이指定하는有價證券의取得

**第23條 (財産處分の制限)** 馬事會는農林部長官의認可없이그所有不動產을讓與, 交換하거나擔保의提供또는權利의拋棄를하지못한다

**第24條 (損失補填準備金)** ① 馬事會는閣令으로定하는額에達할때까지勝馬投票券發賣金の 百分의1以上을損失補填準備金으로積立하여야한다

② 前項의準備金은損失補填에充當하는境遇에限하여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支出할수있다

**第25條 (特別積立金)** ① 馬事會는前條의積立을하고도剩餘가있을때에는農林部長官의定하는바에依하여特別積立金으로積立하여야한다

② 前項의特別積立金은馬匹의改良増殖, 乘馬團體育成, 競馬施設의改善과畜産振興을爲하여必要한經費에充當한다

③ 前項의規定에依한特別積立金を支出하고자할때에는農林部長官의認可를받아야한다

**第26條 (收支決算書)** 馬事會는每事業年度の收支決算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를作成하여當該事業年度經過後 2月以內에農林部長官에게提出하여야한다

**第27條 (監督)** 馬事會는農林部長官이監督한다

**第28條 (命令및處分)** 農林部長官은本法을施行하기爲하여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馬事會에對하여業務에關한監督上必要한命令또는處分을할수있다

**第29條 (報告書)** 馬事會는定款의定하는바에依하여그事業에關한諸般計算과狀況의報告書를農林部長官에게提出하여야한다

**第30條 (理事會出席)** 農林部長官이指定하는公務員은馬事會의理事會其他會議에出席하여意見を陳述할수있다

**第31條 (檢査)** ① 農林部長官은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馬事會에對하여報告시키거나公務員으로하여금그事務所또는競馬場의業務狀況또는帳簿, 書類其他必要한物件의檢査를하게 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하여公務員이檢査하는境遇에는그權限을表示하는證票를携帶하여關係인에게提示하여야한다

③ 審計院은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馬事會의會計經理를檢査할수있다

**第32條 (任員의解任)** ① 農林部長官은馬事會의任員이第12條各號의1에該當하게된때에는이를解任하여야한다

② 農林部長官은馬事會의任員이다음各號의 1에該當하게된때에는이를解任할수있다

1. 本法및本法에依據한命令또는定款, 規約에違反하였을때

2. 心身の故障으로因하여 職務를執行할수없을 때

**第33條** (競馬의 開催) 馬事會는本法에 依하여 競馬를 開催한다

**第34條** (類似行爲의 禁止) 馬事會가아니면 勝馬投票券을 發賣하거나 投票의 中者에 對하여 金錢을 交付하는 競馬其他이 類似한 行爲를 할수없다

**第35條** (競馬場) 馬事會의 競馬場에 關하여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36條** (競馬의 施行) ① 競馬를 施行하고자 할때에는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競馬의 開催期間은 每回 9日以內로 한다

**第37條** (入場料) 競馬를 開催할때에는 入場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수있다

**第38條** (勝馬投票券) 馬事會는 競馬를 開催할때에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勝馬投票券을 發賣할수있다

**第39條** (勝馬投票券의 發賣制限) ① 未成年者에 對하여는 勝馬投票券을 發賣하지 못한다

② 馬事會의 任員 또는 當該 競馬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에 對하여도 勝馬投票券을 發賣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0條** (勝馬投票方法) ① 勝馬投票方法은 單勝式, 複勝式, 雙勝式 連勝式 및 特別勝馬式(福券)의 5種으로 한다

② 勝馬投票方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41條** (還給金) ① 馬事會는 勝馬投票의 中者에 對하여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當該 競走에 對한 勝馬投票券의 發賣金額中에서 還給金을 交付한다

② 勝馬投票의 中者가 없는 境遇의 發賣金은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이 勝馬投票券을 購賣한 者에게 割當하여야 한다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한 還給金의 債權은 1年間이 不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된다

**第42條** (入場料等의 認可) 入場料의 金額, 勝馬投票券의 券面額, 種類, 發賣方法과 還給金의 支拂方法에 對하여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43條** (發賣收得金) 馬事會는 勝馬投票券의 賣得金額에 對하여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이 定하는 比率의 金額을 發賣收得金으로 收得할수있다 但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失補填金과 發賣收得金額의 合計는 發賣金의 百分의 20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44條** (調教師 및 騎手의 免許) 馬事會가 行하는 考查에 合格한 調教師 및 騎手에 對하여 免許證을 交付하며 이 免許證이 없는 者는 競走馬의 調教 또는 騎乘을 할수없다

**第45條** (開催執務委員) 馬事會가 競馬를 開催하고자 할때에는 當該 競馬에 關한 事務를 執行시키기爲하여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開催執務委員을 들수있다

**第46條** (競馬場의 團束) 競馬場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競馬의 公正을 確保하기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47條** (罰圍)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本法에 依한 競馬에 關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賭博을 한 者 또는 이를 補助한 者
3. 馬事會의 任員이나 競馬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監督의 地位에 있는 者로서 前號에 規定한 行爲의 相對가 된 者

**第48條** (同前)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15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馬匹의 競走能力을 一時的으로 높이거나 주리는 藥劑를 使用하여 馬匹을 出走시키신 者
2. 競走에 關하여 財產上의 利益을 얻거나 他人으로 하여 金銀을 貸하기爲하여 競走에서 馬匹의 全能力을 發揮시키지 아니한 騎手

**第49條** (同前)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馬事會의 任員이나 競馬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監督의 地位에 있는 者로서 勝馬投票券을 購買하거나 斡旋을 한 者

**第50條** (同前) 馬事會의 任員 또는 開催執務委員으로서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本法에 依하여 農林部長官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아야 할 事項에 關하여 그 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한 때
2. 第24條, 第25條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第28條의 規定에 依한 農林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 때
4.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怠慢하거나 虛偽의 陳述 또는 報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第51條** (同前)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廢止法令) 西紀1942年2月制令第1號 朝鮮馬事會令은 이를 廢止한다
- ③ (同前) 西紀1925年4月舊法令第42號 競馬法은 이를 廢止한다
- ④ (經過措置) 本法 施行當時의 朝鮮馬事會는 本法 施行日에 本法에 依하여 設立한 韓國馬事會로 본다
- ⑤ (同前) 本法 施行當時의 韓國馬事會의 任員은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但 그 任期는 本法 施行日로부터 起算한다